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시·읍 설치 등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고,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 제출시기를 자율화 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조사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”를 “조사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그 검토결과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”를 “실태조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인구 및 가구의 산정)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,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하며,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및 인구주택총조사(센서스) 결과 등을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실태조사서의 제출) ① 시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<u>조사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</u>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제9조(실태조사서의 제출) ① --- ----- ----- ----- 조사하여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의 실태조사서를 받은 시·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<u>그 검토결과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</u>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실 태조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----- -----.
<u>제14조(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)</u> <u>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(센서스)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.</u>	<u>제14조(인구 및 가구의 산정) 행</u> <u>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,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하며,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및 인구주택총조사(센서스) 결과 등을 사용할 수 있다.</u>